美國의 司書職 倫理綱領

金 正 根 譯

<譯者의 말 : 專門職의 特徵을 우리는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專門職이 遂行하는 일의 性格이 慣例的이며 日常的인 것이 아니고 知的인 判斷力을 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專門職의 일은 그 目的이 個人의 金錢的 利益에 있지 아니 하고 對社會奉仕에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專門職團體에서 倫理綱領을 標榜하게 되는 所以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專門職의 特徵을 말할 때 첫째 일의 性格이 知的이란 것과 둘째 職業倫理綱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司書職이 專門職으로서 그 基盤을 굳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에 있다. 여러가지 方面의 努力이 要求되겠지만, 外國의 先例에 따라 韓國司書職의 倫理綱領을 制定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한가지 重大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 作業을 시작할 때 參考가 될까싶어 美國의 司書職倫理綱領을 飜譯·紹介하는 바이다.

여기에 싣는 前文을 포함하여 28條目에 걸친 內容은 1938年 ALA에 의하여 採擇된 이래 지금까지 通用되고 있는 것으로서 現在 美國에서는 本綱領에 대한 改訂案이 提示되어 關係人들에 의하여 檢討中에 있음을 附記하여 둔다.>

前 文

1. 社會制度로서의 圖書館은 圖書館顧客의 福利를 위하여 存在한다. 이 때 顧客이란 地域社會의 住民일 수도 있고, 한 敎育機關의 構成員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보다 더 큰 規模의 集團이나 더욱 專門的인 性格을 띤 團體일 수도 있다. 圖書館職에 從事하게 되는 者는 소속 圖書館의 運營當局者(governing authority) 圖書館顧客, 社會制度로서의 圖書館과 同僚司書, 其他圖書館職에 있는 同僚會員 및 社會一般과의 諸般關係에 있어서 倫理的인 行動基準을 지켜야 할 義務를 진다.

2. 本倫理綱領에서 "司書"라 함은 美國圖書館協會의 基準에 依據, 性格上 專門的인 것으로 認定되는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圖書館에 雇用되는 者 一切에게 適用되는 말이다.

3. 本倫理綱領에서는 專門職司書에게 要望되는 倫理的行動의 諸般原則을 밝힌다. 本倫理綱領은 特權의 宣言도 아니며 具體的인 狀況下에서 司書가 취할 바 行動의 實際를 밝히고 있지도 않다.

Ⅰ. 司書와 圖書館運營當局者의 關係

4. 司書는 맡은 바 義務를 遂行하되 소속 圖書館의 運營에 대한 最終 決定權은 公式的인 節次에 依據, 構成된 圖書館運營當局者에게 있다는 사실을 知悉하여야 한다. 圖書館의 運營權은 個人에게 賦與되는 경우가 있고 委員會 등의 集團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5. 圖書館長은 圖書館運營當局者로 하여금 專門職의 諸基準과 進步的인 傾向에 대하여 精通하도록 이들에게 關係情報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 司書는 圖書館運營當局者의 方針과 運營當局者가 任命한 執行責任者의 方針을 따르되 圖書館에 대한 忠誠心을 갖고 任務에 임할 義務가 있다.

6. 圖書館長은 圖書館運營當局者의 決心을 圖書館職員團에 傳達·說明하여야 하며 圖書館職員과 運營當局者間에 友好的인 關係가 維持되도록 하기 위하여 中介者로서의 役割을 감당하여야 한다.

7. 圖書館運營當局者에 대한 圖書館職員의 任命推薦은 圖書館長이 하되, 이 일은 職責에 대한 志望者의 專門的, 個人的 資質만을 標準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한다. 業務의 持續과 昇進은 明白히 알려진 方針에 依據, 勤務成績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圖書館業務의 成果를 期하기 위하여 圖書館人事에 變化가 올 必要가 있을 때는 適時에 豫告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調整이 不可能할 때는 圖書館의 旣定方針과 業務規定에 依據, 만족스럽지 못한 勤務狀態를 根絕시키는 措置가 취해져야 한다.

8. 個別 職員組織이나 이들 組織의 集合體가 내린 決議事項, 請願 및 要望事項은 正當하게 選出된 이들의 代表者를 통하여 圖書館長에게 傳達되어야 한다. 職員組織과 館長間에서 相互 만족한 解決策에 이르지 못할 때는 圖書館長은 職員團의 要請에 依據, 當該 事件을 圖書館運營當局者에게 移管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職員團에서는 自身들의 見解를 직접 開陳·證言하기 위하여 代表者를 運營當局者에게 派遣할 수 있도록

要請할 수 있다.

Ⅱ. 司書와 圖書館顧客의 關係

9. 圖書館長은 직접 顧客과 接觸을 갖는 實務司書들의 도움을 얻어 圖書館의 現在와 將次의 必要事項을 硏究해 두어야 하며 이들 必要에 根據하여 資料獲得에 나서야 한다. 資料는 圖書館의 政策과 豫算의 範圍內에서 最大로 廣範하게 蒐集되어야 하며 多樣한 見解를 代辯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圖書館의 資源과 奉仕內容을 潛在的인 圖書館利用者에게 紹介하는 것은 司書의 責任이다. 圖書館을 利用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公正한 奉仕가 미치게 하는 일도 司書의 責任이다.

11. 司書는 圖書館顧客과의 接觸에서 얻어지는 私的인 事實에 대해서는 秘密에 붙여야 할 責任이 있다.

12. 司書는 圖書館財産保護에 用力하여야 하며 圖書館利用者들에게도 이와같은 責任意識을 啓發시켜 줄 義務가 있다.

Ⅲ. 圖書館內의 司書間의 關係

13. 圖書館長은 權利를 分讓하며 圖書館職員의 責任意識과 創意力을 啓發시키며, 이들의 專門職으로서의 成長을 도우며 이들의 功績을 認定하는 데 너그러워야 한다. 圖書館職員은 自身들의 職責에 따르는 義務와 圖書館의 諸方針 및 問題點을 熟知하고 있어야 한다.

14. 同僚司書間의 信義와 個人 또는 部署間의 協助精神은 效果的인 圖書館奉仕를 낳기 위해서는 必須的인 要件이다.

15. 圖書館의 政策, 奉仕內容 및 人事에 關한 批判은 關係者에게만 傳達되어야 하며 이일은 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한가지 目的下에서만 가능하다.

16. 圖書館의 職責을 受任함에는 職責受任 이후 業務에의 適應에 必要한 消費的인 期間을 능히 報償할 수 있는 期間만큼 同職責에 머물러 있어야 할 義務가 隨伴된다. 契約 또는 協定이 이루어진 경우는 同契約 또는 協定의 期間이 만료되거나 雙方의 合意에 따라 이들이 解消될 때까지 契約 또는 協定은 誠實하게 遵守되어야 한다.

17. 辭任의 意向은 事前에 表示되어 이의 處理와 後任者任命에 時間的인 여유가 있게 하여야 한다.

18. 司書는 圖書館을 위한다는 目的으로 個人的인 利益을 가져오는 事業關係에 加擔하여서는 안 된다.

19. 司書는 圖書館顧客에게로 갈 奉仕에 損失을 招來하면서까지 圖書館資源을 個人的인 利用에 돌리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Ⅳ. 司書와 圖書館職과의 關係

20. 司書는 圖書館職이 一種의 敎職임을 認識하여야 하며, 따라서 司書自身의 發展如何에 따라서 奉仕의 效果가 增減한다는 事實을 認識하여야 한다.

21. 圖書館業務에 있어서는 유독 이에 從事하는 個人의 能力과 性格上의 特性이 큰 重要性을 갖는 점에 비추어 司書는 합당한 適性을 가진 者만을 圖書館職으로 勸誘할 것이며 適性이 없는 者의 圖書館職 從事는 이를 挽留하여야 한다.

22. 人事推薦은 秘密히 하여야 하며 被推薦人의 長短點을 公正하게 開陳함으로써 志望者와 將次의 雇用主에게 公正性을 지켜 주어야 한다.

23. 司書는 圖書館職에 깊은 信念과 選擇을 許諾하지 않는 興味를 가져야 한다. 司書는 적절한 賃金과 作業條件을 爭取維持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4. 他圖書館의 圖書館政策이나 運營의 實際에 대한 公式的인 評價는 他圖書館의 運營當局者 또는 館長의 要請이 있을 때만 있을 수 있다.

25. 司書는 圖書館職의 本質的인 單一性을 깊이 認識하고 圖書館聯合機構의 會員으로 加入하여야 하며 圖書館關係 會合에 參與할 態勢가 되어 있어야 한다.

Ⅴ. 司書와 社會의 關係

26. 司書는 社會一般이 圖書館事業의 價値를 認識하도록 이들을 啓蒙하여야 하며 目的이 圖書館의 그것과 合致되는 運動, 機構 또는 制度에 대하여 熟知하고 있어야 한다.

27. 圖書館이 敎育, 社會 및 文化機構의 一員임을 證言하기 위하여 司書는 公共 및 地域社會의 各種行事에 參與하여 圖書館을 代表하여야 한다.

28. 司書의 行動擧止는 圖書館과 圖書館事業에 대하여 公衆이 갖는 尊敬心을 능히 維持시킬만큼 品位있는 것이어야 한다.

(譯者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助敎)